

# 준법·윤리경영 정책

## 1. 목적

HD 현대오일뱅크 (이하 '회사')는 '세상을 이끄는 혁신, 두려움 없는 도전, 서로에 대한 존중, 모두를 위한 안전'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고객, 주주,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기업을 지향한다. 또한, 회사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수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구축하기 위해 본 정책을 수립한다.

##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 및 계열사와 그 임직원,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이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회사는 본 정책을 기반으로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되, 관련 현지 법률 및 규제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 3. 기본 원칙

회사와 모든 이해관계자는 사회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국내외 법률 및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르고,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3. 정당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4. 회사와 협력사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5. 준법·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한다.
6. 준법·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관련 점검,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불법, 불공정, 부패 등의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제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며, 철저한 제보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 4. 영역별 세부 원칙

### (부정부패)

회사는 경영 전략적 의사결정에 부패방지법령 준수를 기반할 수 있도록 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활동 및 업무수행을 위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해야 한다. 예상되는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부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통제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실행 목적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청렴한 직무수행 및 뇌물 방지)

모든 이해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적 또는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반독점 및 공정거래)

회사와 모든 이해관계자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지시, 승인 또는 묵인, 방조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독점,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공정거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해야 하며,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이해상충행위 방지)

회사와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주관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이해관계의 상충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 (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 및 자금세탁 방지)

회사의 유형자산과 정보,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은 승인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직원은 이러한 자산의 부당한 전용,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의 비용은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공무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지역의 자금세탁 또는 범죄 활동에 자금의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회계부서는 부패방지법령 또는 부패방지법령 준수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관련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기 행위 방지)

회사는 임직원의 사기활동을 발견했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기는 절도,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의 오용, 또는 뇌물 및 부패, 허위 회계, 허위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서명을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서는 안 되며, 증빙과 실제 사용처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 5. 거버넌스

회사의 준법, 윤리, 공정거래 관련 주관조직이 본 정책을 준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활동을 수행한다. 회사는 준법지원인, 부패방지 책임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지정하고 준법지원인 등은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자의 위임을 받아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최종수정일: 2025년 4월)